



보도 참고자료

- ▶ 2010. 7. 15 배포
- ▶ 총 3 쪽 (사진없음)

- ▶ 안전보건정책과 서기관 송 병 춘
- ▶ 전화 : 02-6922-0916
- ▶ 팩스 : 02-6922-0971
- ▶ 메일 : songbych@moel.go.kr

<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(알림마당<e-노동뉴스>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>

선박 및 보트건조업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포함된다.

-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-

- 선박 및 보트건조업(조선업) 근로자들의 사고예방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선박 및 보트건조업을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7월 15일 입법예고 되었다.
- 이번 개정안은 업종특성상 유해·위험요인이 많아 작업과정에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선박 및 보트건조업을 현재 석유화학물질 제조업 등에 부과하고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시켜는 한편,
 - 화학 공정상의 안전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작업과정상의 안전과 보건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“안전보건보고서”로 변경하였으며
 - “중대산업사고”의 범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,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.

※ 현재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인 중대산업사고의 정의가 “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”로 규정되어 있어 그 범위가 불명확(법 제49조의2제1항)

○ 또한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(2009.8.7 시행)으로 **안전관리대행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지정권한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서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규모 증가를 반영하여 이들 지정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였다.**

○ 그리고,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게 **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품명, 모델, 제조·판매 수량, 판매처 현황 등을 기록 보존토록 하였고**

-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들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의 제조·판매자에게 **관련 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 또는 보고하도록 개선하였다.**

※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 및 설비 8종 중 7종은 안전검사 대상으로서, 제품 출고 후 사업자에서 사용단계의 수검관리를 위하여 판매현황 파악 필요

○ 아울러, 직업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조사 거부·방해 등으로 그 원인 규명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**역학조사에 대한 비협조 유형을 거부·기피·방해로 명확히 규정** 하는 한편,

-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**과태료 부과금액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1,500만원으로 상향** 조정하였다.

○ 이 외에도,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신규채용 시 교육을 **건설업 차원의 기초안전교육 이수제**로 대체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개별현장 단위가 아닌 건설업 차원에서 실시, 관리토록 개선하였고

- 석면조사결과 관련 서류의 기록·보존 의무주체를 건축물 등 철거·해체자로 통일하는 동시에, 석면 조사기관에도 기록·보존 의무를 부과하였으며

※ 현행 법 제38조의2제1항은 건축물 등 철거·해체자에게 석면조사 결과의 기록·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있고, 법 제64조(서류의 보존) 제1항은 동 의무의 주체를 사업주로 규정하여 불일치하므로 바로 잡을 필요

- 유해·위험기계기구 등을 “사업주가 아닌 자가 사용할 경우”와 “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한 자가 다를 경우”에는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도록 수검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
※ 현재는 유해·위험기계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“사용하는 사업주”로 하여금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(법 제36조제1항)

-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의 기계·기구가 산업현장에 개발·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자 등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을 현행 방호장치·보호구 외에 의무안전인증·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기계·기구 및 그 밖의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기계·기구로 확대하였고

-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자의 유해·위험기계 등의 보유현황 및 검사이력 등 정보를 종합관리하고, 안전검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.

○ 오늘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8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,

-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(금년 9월말 예정)된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